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4
------------------	-----

제출년월일 : 2001. 2. 27
제 출 자 :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범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주차요금 감면, 10분단위 주차요금체계의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종전의 공영주차장 위탁범위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에 규정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자와 주민의 공공복리 목적의 주민자율 조직을 추가, 확대하는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 나. 종전의 최초 30분 주차기본요금, 주차가중요금제도를 폐지하여, 10분 단위의 주차요금체계로 조정, 정수하도록 변경함(안 별표 1).
- 다.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요금 50% 감면규정을 80%로 확대하며, 노상(路上)주차장 1시간주차, 부제(部制)운행, 카풀차량의 감면규정을폐지하고 지하철환승 목적의 주차장이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3조 제3항).
- 라.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의무 이행시까지 운행제한장치(바퀴채움)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3.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및 관련회의(2000.12.15)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결과(2001. 2. 6. ~ 2. 26)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주차장의 위탁관리)중 제1항의 본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3. 주민의 공공복리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지역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율조직

제3조(주차요금)중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의 본문중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의 제5항을 같은조에 제4항으로, 같은조 제6항중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조의 제5항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조제7항을 제6항으로, 제8항을 제7항으로 변경한다.

③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 당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⑤ 구청장은 별표1의 비고 제3호의 마목의 주차장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주차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의 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5.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이상 체납 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 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 제한 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 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가.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 나.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으로 3만원 징수
8.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1회 주차

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관리수탁자는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의 사용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②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을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가산금 징수)의 제1호중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하

고, 같은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표의 비고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1항관련)

(단위:원-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 주차시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 고>

1. 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광진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노상·노외)에 적용한다.

2.~4. (생략)

5.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 할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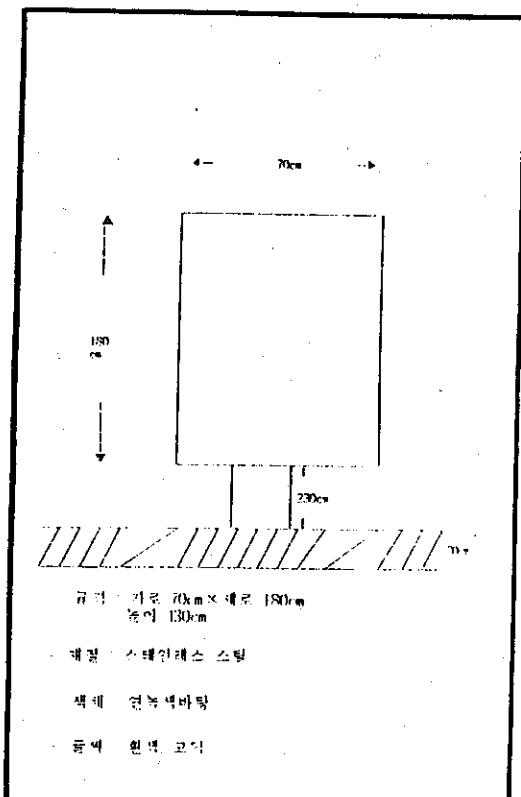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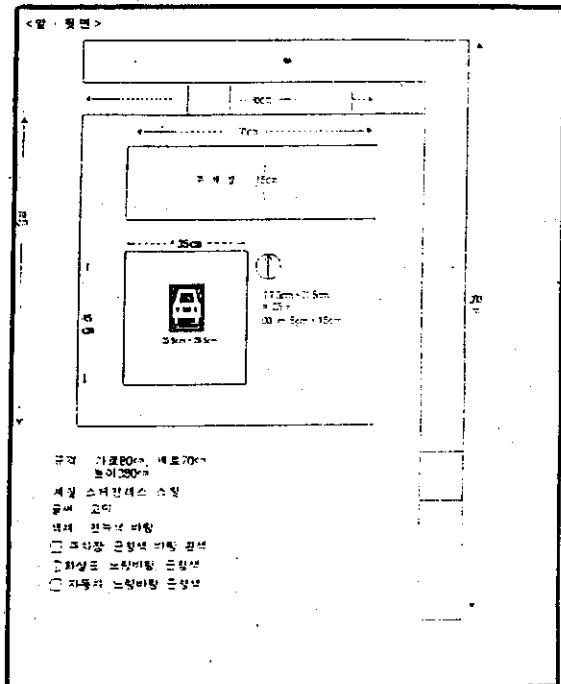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8조제4항관련)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 (제11조2항관련)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로 한다)에 운행하는 경우에 정기권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기권 이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징수한다.</p> <p>④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p>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 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③----- ----- ----- <u>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u></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p>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⑥구청장은 별표1의 비고 제3호마 목의 주차장에 한하여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이 월정기권 을 신청시 주차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1. 10부제 운행차량(서울특별시장 장이 교부한 10부제 자율실천차 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 자로서 같은법 제 1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p> <p>⑦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 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 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 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⑧2이상이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p> <p>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생 략) 1. (생략)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4. (생략)</p>	<p>⑤----- -----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주차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1. <삭제></p> <p>2. <삭제></p> <p>⑥----- ----- ----- ----- ----- ----- -----</p> <p>⑦----- ----- ----- ----- ----- -----</p> <p>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현행 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 를 사용하는 방법 3.~4.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5.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 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신 설>	<p>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 제한의 해제 요청이 있으면 주차 요금, 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 제한 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신 설>	<p>7. 제5호 및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 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수한다. 이 경우 차량 운행장치를 설치 한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할 때 까지의 주차요금은 정수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해제비용 미정수 나.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 하는 경우:해제 비용으로 3만원 정수
<신 설>	<p>8. 구청장은 주차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9. 관리수탁자는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주차카드의 판매등) ① 제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u></p>	<p><u>제5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u></p> <p><u>①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의 사용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u></p> <p><u>②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u></p> <p><u>③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u></p> <p><u>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을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신 설></p>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가산금 징수) 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1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에 의한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 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1.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 측정계 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이 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제6조(주차요금 가산금 징수) ---- ----- ----- ----- ----- ----- ----- ----- ----- ----- ----- ----- ----- ----- ----- ----- ----- 1. 주차카드 ----- ----- ----- ----- ----- ----- ----- ----- ----- ----- ----- ----- ----- ----- ----- ----- ----- 2.~8. (생략) <신 설>
	2.~8. (현행과 같음)
	9.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 을 감면받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1항관련)

현 행									개 정(단위:원-구획당)							
구 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구 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 주차권 (기간내 한방)	월 정기권	1회 주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10분당	1일주차권 (기간내한방)	주간	야간	1회 주차시 10분당	주간
1급 지	1구획 최초 30분 1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1일주차권 (기간내 한방)	주 간 야 간	1회 최초 30분 1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회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 지	1천 5천 5천	500원	1천원	4천원	-	-	1천 500원 500원	500원	18만원 6 만원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 지	1천원	300원	600원	3천원	-	-	1천원	300원	10만원 4 만원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 지	600원	200원	200원	2천원	5 만 원	-	500원 500원	200원	환승목적 -주차시 4만원 -기타 5만원 2 만원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 주차시40,000 기타 50,000	20,000
5급 지	300원	100원	100원	1천원	3 만 원	2 만 원	100원 100원	<신설>	2 만원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광진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4. (생략)

<신 설>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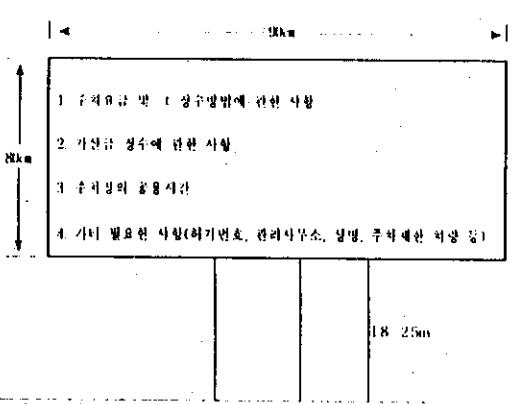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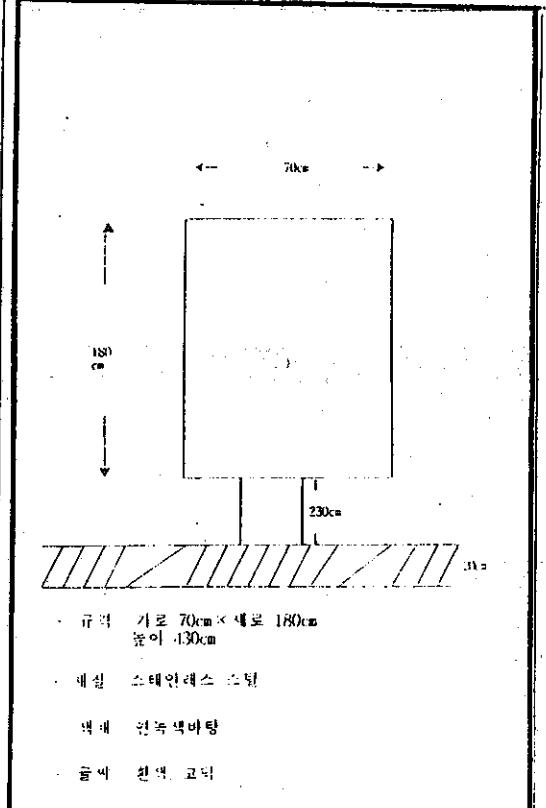
1. 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광진구
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노상·노
외)에 적용한다.

2.~4. (현행과 같음)

5.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목적
지 전철역장의 이용 할인을 받아 주
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10조제2항 원형)</p>  <p>- 비 고 -</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h>구 분</th> <th>내 용</th> <th>제 작 자 방 법</th> <th>제 작 자 방 법 (단위cm)</th> </tr> <tr> <td>공 영 주 차 장</td> <td>일부면적 및 첨원</td> <td>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td> <td>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td> </tr> <tr> <td>민 영 주 차 장</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 분	내 용	제 작 자 방 법	제 작 자 방 법 (단위cm)	공 영 주 차 장	일부면적 및 첨원	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	민 영 주 차 장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8조제1항 관리)</p> 
구 분	내 용	제 작 자 방 법	제 작 자 방 법 (단위cm)										
공 영 주 차 장	일부면적 및 첨원	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 작 자										
민 영 주 차 장													

<신.구 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3호서식></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노의 주차장 표지 (제11조제1항 원본)</p> </div> <p style="margin-top: 20px;">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표 : 원무미집 분 : 이기원 • 대 표 : 바당(성격) : 문재(한국) • 대 표 : 외부 표지판 : 바당(한국) • 대 표 : 바당(한국) : 문재(한국) • 표지 : 대우표지판(가로 30, 세로 25센티미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 : 세로 17, 세로 17센티미터) • 바깥에 주차장 위치의 지명이 용이하도록 문지, 가로 등에는 이정지어야 한다 	<p><별지 제3호서식></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노의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 (제11조2항 관린)</p> </div>